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신기술 · 특허공법 선정분야 특정감사 —

2025. 2.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계		1건	1	0	0	0	0	0	0	0
1	과 등	군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1	-	-	-	-	-	-	-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군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군 ▣▣▣▣과 등 2개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해당 공사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절차¹⁾를 진행하였다.

[표 1] 신기술·특허공법 개요

사업명 (발주부서)	공법명	공법제원	사업비* (억원)	공고번호	위원회 개최방법	비고
♣♣♣(♣♣♣) 개체공사 (●●과)	합성형라멘교 거더	L=26.414m B=12.50m	§§	▣▣▣▣군 공고 제2023-★★★★호	대면 (‘23.12. 7.)	관급 자재
◆◆◆◆◆ ▣▣▣▣ 교면보수공사 (●●과)	교면방수	A=7,577㎡	§§	▣▣▣▣군 공고 제2024-★★★호	대면 (‘24. 5.17.)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과)	배수펌프	300㎡/min×H12.0m 120㎡/min×H12.0m	§§	▣▣▣▣군 공고 제2023-★★★호	대면 (‘23. 9. 14.)	
	제진설비	W4.5m×H7.1m 목폭 : 70mm, 설치각도 : 75°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과)	개량형 말뚝	연장 : 10.0m 사용본수 : 24본 전체길이 : 240.0m	§§	▣▣▣▣군 공고 제2024-★★★호	서면 (‘24. 5.24.~29.)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과)	배수펌프	340㎡/min×H8.0m 170㎡/min×H8.0m	§§	▣▣▣▣군 공고 제2023-★★★호	대면 (‘23. 9.14.)	
	제진설비	형식 : 로터리식 W5.0m×H6.7m 목폭 : 70mm, 설치각도 : 75°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과)	개량형 말뚝	연장 : 10.0m 사용본수 : 393본 전체길이 : 7,394.0m	§§	▣▣▣▣군 공고 제2024-★★★호	서면 (‘24. 5.24.~29.)	

* 사업비 : 신기술·특허공법으로 선정된 제안서의 제안금액

1) 평가기준 확정 → 평가위원 모집 공고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고 →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 정성평가 → 평가결과 공개 → 공법선정자 통지

1.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및 위원회 구성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제1관 3에 따르면 ‘공법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3관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법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 평가 전일까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참여자²⁾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평가위원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〇〇군 〇〇과 등 2개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면서 신기술·특허공법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등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개체공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위원회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시 후보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 없이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〇〇군 재해

2) 제안참여자 : 해당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에 참여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영향평가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사업부서 임의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평가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결여하였다.

[표 2] 신기술·특허공법 위원회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현황

사업명 (발주부서)	평가위원 후보군 모집	예비명부 작성		선정 평가위원	비 고
		작성 방법	작성 인원		
♣♣♣(♣♣♣) 개체공사 (○○과)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 ㉠㉠군 재해영향평가위원 등 후보군 대상	평가위원 후보군 중 적격자 임의 선정	21명	7명	
◆◆◆◆◆◆◆◆ ㉠㉠ 교면보수공사 (○○과)		평가위원 후보군 중 적격자 임의 선정	21명	7명	위원회 1명 불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배수펌프, 제진설비 (㉠㉠㉠과)		평가위원 후보군 중 적격자 임의 선정	24명	7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개량형 말뚝 (㉠㉠㉠과)		평가위원 후보군 중 적격자 임의 선정	21명	7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배수펌프, 제진설비 (㉠㉠㉠과)		평가위원 후보군 중 적격자 임의 선정	24명	7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개량형 말뚝 (㉠㉠㉠과)		평가위원 후보군 중 적격자 임의 선정	21명	7명	

또한 ㉠㉠군 ○○과에서 추진한 ‘◆◆◆◆◆◆◆◆ ㉠㉠ 교면보수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해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평가위원을 7인 이상으로 구성하였으나 위원회 개최 전일 저녁에 평가위원 1명으로부터 불참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 전까지 예비위원 중에서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하지 않고 6인으로 공법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원회가 공정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지 못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법선정위원회 심의방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제3관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고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 제안서를 평가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제안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참여자는 공법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〇〇군 〇〇과에서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해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공정하게 회의를 주관하여 위원들이 제안서를 평가 하도록 하고 제안 참여자가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은 제안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법평가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하여 공법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실시하여 제안참여자에게는 공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공법선정심의위원들에게는 공법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게 되어 위원회가 심도 있고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게 되었다.

3.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정량평가 방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12절 제2관 6에 따르면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아래 [표 3]과 [표 4]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별표]에서 정하고 있다.

[표 3]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	- 공사기간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80	▪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 내구·내진·내화·내습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용이성 -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경관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 외부마감 상태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표 4] 공사비 평가(기준에서 정한 공사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평가 요소	등 급	평 점
공사비	◦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A. 90% 미만	10.0
		B. 90% 이상 95% 미만	9.0
		C. 95% 이상 100% 미만	8.0
		D. 100% 이상 105% 미만	7.0
		E. 105% 이상	6.0

그리고 같은 기준 제4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며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㉔㉔군 ㉔㉔㉔과 등 2개 부서에서는 해당 공사에 적용하려고 하는 신기술·특허공법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별표]에 따라 평가기준을 확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가. 정량평가 기준 적용 부적정

그런데도 ㉔㉔군 ㉔㉔㉔과에서는 해당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변경 적용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 과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아래 [표 5]와 같이 시공 실적, 기술보유, 지역참여도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공법선정에 필요한 정량평가가 적정하게 평가되지 못하게 하였다.

[표 5] 정량(객관적)평가 기준

사업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계			30	
◁◁ 및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배수펌프, 제진설비)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 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10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5	
	시공실적	- 최근 10년간 시공실적 건수(배수펌프) · 5건 이상 : 10점, 4건 : 9점, 3건 : 8점 · 2건 : 7점, 1건 이하 : 6점 - 최근 10년간 시공실적 건수(제진기) · 10건 이상 : 10점, 8~9건 : 9점 · 6~7건 : 8점, 4~5건 : 7점, 4건 미만 : 6점	10	
	물품의 우수성	- 방재신기술 보유여부 · 보유 : 2점, 미보유 : 1점	2	
	지역참여도	- 경상북도 내 소재지 · 경상북도 내 소재한 업체 : 3점, 그 외 : 1점	3	

또한, 위 부서에서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 6]와 같이 해당 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특허공법(배수펌프, 제진기)에 대하여 시공실적(10점)을 정량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하였으나 공법제안사들의 시공실적 기준 완화 요청을 사유로 인하여 공고를 취소한 뒤 관련 규정 및 근거 없이 시공실적 기준을 완화하여 재공고하는 등 공법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수립의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

[표 6]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사업명	최초 공고		재공고		비고
	공고번호	시공실적 기준	공고번호	시공실적 기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배수펌프, 제진설비)	제2023-***호 (2023. 6.19.)	최근 5년간 시공실적 - 수중사류펌프 (D1,500mm)	제2023-***호 (2023. 6.30.)	최근 10년간 시공실적 - 수중사류펌프 (D1,000mm)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배수펌프, 제진설비)	제2023-***호 (2023. 6.19.)	- 로터리 제진기 (W2.0m)	제2023-***호 (2023. 6.30.)	- 로터리 제진기 (W2.0m)	

나. 공사비 평가방법 부적정

그리고 目目군 目目目目과, 〇〇과에서는 ‘♣♣♣(♣♣♣) 개체공사’ 등 6개 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사비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대비 최저 비율(80% 미만 등)의 공사비를 제안한 참여자에게 최하점(0점 또는 6점)을 부여 하는 등 아래 [표 7]~[표 8]와 같이 자체적으로 정한 공사비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공법제안 평균 공사금액보다 저렴하게 공사비를 제안한 제안 참여자에게 최저점을 부여하도록 평가기준을 확정·공고하여 제안참여자로부터 공법 제안서³⁾를 접수하였다.

[표 7] 공사비 평가(자체 평가기준)

사업명	배 점(10점)							
	80%이상 85%미만	8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100%미만	100%이상 105%미만	105%이상 110%미만	110%이상 115%미만	115%이상 80%미만
♣♣♣(♣♣♣) 개체공사(〇〇과)	7.0	8.0	9.0	10.0	9.0	8.0	7.0	0.0
◆◆◆◆◆◆◆◆ 目目目 교면보수공사(〇〇과)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目目目目과)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目目目目과)								

[표 8] 공사비 평가(자체 평가기준)

사업명	배 점(10점)							
	80%이상 85%미만	8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100%미만	100%이상 105%미만	105%이상 110%미만	110%이상 115%미만	115%이상 80%미만
◁◁ 및 ▷▷ 자연재해위험개 선지구 정비사업 (개량형 말뚝)	7.0	8.0	9.0	10.0	9.0	8.0	7.0	6.0

3) 공법 제안서 : 제안 참여자가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또한 ㉠㉡군 ㉢㉣㉤㉥과, ㉦㉧과에서는 아래 [표 9]와 같이 ‘㉨㉩ ㉪㉫㉬㉭㉮ ㉯㉰㉱ 교면보수공사’ 등 3개 공사에 적용하려는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산출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법제안자 평균 공사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제안참여자가 제시한 공사비 중 최고 및 최저 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평균으로 제안 평균 공사금액 산출기준을 확정·공고하여 제안 참여자로부터 공법 제안서를 접수하였다.

[표 9] 평균 공사금액 산정(자체 평가기준)

순번	사업명	평균 공사금액 산정	비 고
1	㉨㉩ ㉪㉫㉬㉭㉮ ㉯㉰㉱ 교면보수공사	최고가 및 최저가 제외한 제안금액 평균	㉲㉳과
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과
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그 결과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신기술·특허공법(배수펌프)의 경우 아래 [표 10]와 같이 1차 정량평가 과정에서 최저 금액을 제안한 (주)㉼㉽㉾㉿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점을 부여하여 정량적 평가 순위에 따른 정성적 평가(2차)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군 ㉢㉣㉤㉥과에서는 높은 공사비를 제안한 공법제안 참여자가 최종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사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표 1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결과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발주부서)	제안사명	추정금액 (선정공고 시)	제안 참여사 제안 금액	평균 공사비 대비 비율(%)		공사비 평가 점수		비고
				자 체 기 준	평 가 기 준	자 체 기 준	평 가 기 준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배수펌프)	(주)◀◀◀◀	\$., \$\$\$	\$., \$\$\$	88.59	88.66	8	10	정성평가 기회 박탈
	(주)♡♡♡♡ (선정업체)		\$., \$\$\$	97.89	97.98	10	8	2차 평가
	♣♣♣♣(주)		\$., \$\$\$	98.72	98.80	10	8	
	♠♠♠♠♠		\$., \$\$\$	101.37	101.43	9	7	
	(주)▣▣▣▣▣▣		\$., \$\$\$	104.10	104.17	9	7	2차 평가
	☆☆☆☆☆(주)		\$., \$\$\$	97.64	97.70	10	8	2차 평가
	○○○○(주)		\$., \$\$\$	93.96	94.03	9	9	2차 평가
	▶▶▶▶▶(주)		\$., \$\$\$	107.76	107.85	8	6	2차 평가
	♣♣♣♣♣		\$., \$\$\$	98.55	98.63	10	8	
	(유)○○○○○		\$., \$\$\$	110.66	110.75	7	6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배수펌프)	(주)◀◀◀◀	\$., \$\$\$	\$., \$\$\$	86.42	86.89	8	10	정성평가 기회 박탈
	(주)♡♡♡♡ (선정업체)		\$., \$\$\$	99.87	100.40	10	7	2차 평가
	♣♣♣♣(주)		\$., \$\$\$	102.80	103.34	9	7	
	♠♠♠♠♠		\$., \$\$\$	105.12	105.66	8	6	
	(주)▣▣▣▣▣▣		\$., \$\$\$	108.36	108.93	8	6	
	☆☆☆☆☆(주)		\$., \$\$\$	101.32	101.85	9	7	2차 평가
	○○○○(주)		\$., \$\$\$	97.70	98.22	10	8	2차 평가
	▶▶▶▶▶(주)		\$., \$\$\$	96.08	96.58	10	8	2차 평가
	♣♣♣♣♣		\$., \$\$\$	102.55	103.08	9	7	
	(유)○○○○○		\$., \$\$\$	94.56	95.06	9	8	2차 평가

※ 피감사기관 제출자료 취합

4.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제1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며 타 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 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2관 7에 따르면 사업부서는 공법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㉔㉔군 ㉔㉔㉔㉔과에서는 해당공사에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법제안서를 평가한 후 선정된 신기술·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의 교량 4개소에 반영되는 신기술·특허공법(합성형 라멘교(거더))에 대해 동일공법이 적용된 교량4)의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 금액이 1억원 이상 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및 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㉔㉔군 자재선정 심의위원회5)를 통해 공법을 선정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5. 동일 구조물 교량공사 설계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4) [제6▼▼교, 제8▼▼교(AR 강합성 라멘교), 추정금액 888,888천 원]
[제7▼▼교, 제9▼▼교(HDA 합성형 라멘교), 추정금액 888,888천 원]
5) 내부위원(공무원)3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

규정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량공사 등 기초, 교각, 거더, 상판 등으로 구성되어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동일 구조물⁶⁾ 공사에 대해 부분별로 분할 발주할 경우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공사에 포함시켜 통합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00000 000과에서는 ‘♣♣♣(♣♣♣) 개체공사’를 추진하면서 교량 거더⁷⁾를 하부공 등의 공사와 분할하여 공사가 아닌 물품(관급자재)제작·설치로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하나의 구조물인 교량에 대해 향후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및 장기 공사의 경우 물품으로 계약된 해당 공법의 제작·설치가 완료되는 순간부터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어 발주된 공사와 하자보증기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하자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조치할 사항 00000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동일 구조물공사(교량 거더)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도급내역 반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징계 처분(개별 징계요구서 별첨), BBB, CCC, DDD는 훈계 처분, EEE는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절 4.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 공사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하는 것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함

7) 거더(Girder) 교량의 상부 구조물을 떠받치는 보(beam)를 뜻하는 말로 I형이나 박스형 단면으로 만들어 휨이나 비틀림에 입체적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함